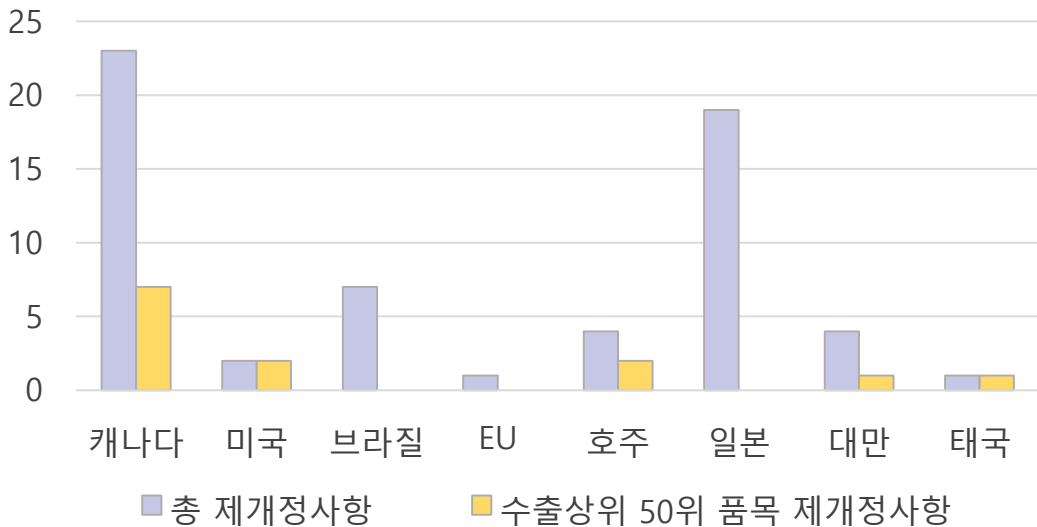


1. 식품첨가물·유해물질 기준규격 변동사항

○ 국가별 기준규격 변동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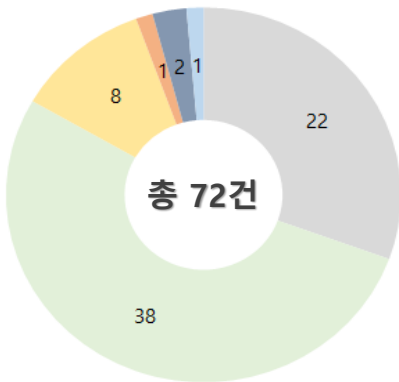


- 2022년 조사대상 21개국 전체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의 제·개정사항은 총 72건이며, 이 중 한국산 가공식품의 수출 상위 50위 품목에 해당하는 제·개정사항은 19건으로 총 제·개정사항의 약 26%에 해당됨
- 국가별로 제·개정사항이 가장 많은 국가는 캐나다(23건), 일본(19건)이며 수출 상위 50위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캐나다(4건), 호주 및 미국(2건) 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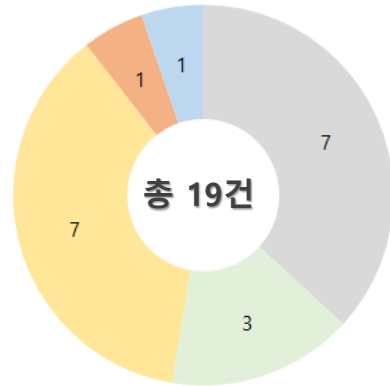
1. 식품첨가물·유해물질 기준규격 변동사항

○ 물질별 분류현황

총 제·개정사항



수출 상위 50위 품목 제·개정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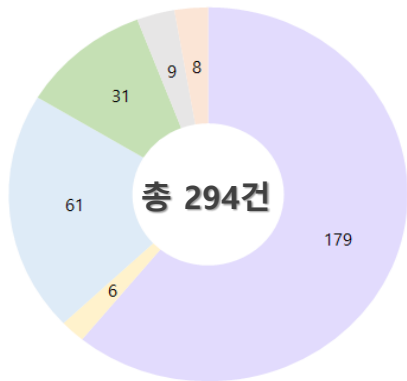


■ 식품첨가물 ■ 잔류농약 ■ 신소재식품 ■ 멜라민 ■ 중금속 ■ 기타 ■ 방사능 : 0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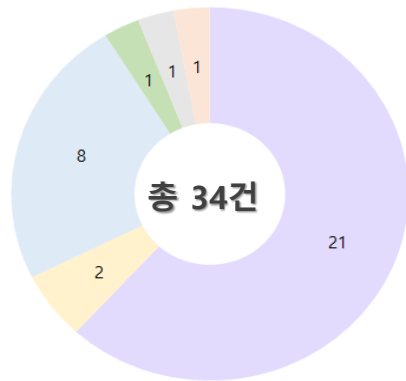
- 총 제·개정사항 기준으로 잔류농약(38건) 및 식품첨가물(22건) 관련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했으며, 수출 상위 50위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(7건) 및 신소재식품(7건)과 관련된 제·개정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

○ 식품유형별 분류현황

총 제·개정사항



수출 상위 50위 품목 제·개정사항



■ 일반가공식품 ■ 식육가공품 ■ 농산가공품
■ 축산가공품 ■ 수산가공품 ■ 기타

■ 일반가공식품 ■ 식육가공품 ■ 농산가공품
■ 축산가공품 ■ 수산가공품 ■ 기타

- 식품유형별 제·개정사항은 일반가공식품류, 농산가공품 순으로 나타났으며, 일반가공식품류의 경우는 모두 과자류 및 빵류, 음료류 등과 관련 변동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함

* 식품첨가물, 유해물질 제·개정 사항에 대해 다수의 식품유형이 적용되므로 '물질별 분류현황'과 '식품유형별 분류유형' 건수는 상이함

2. 기준규격 변동 현황 시사점

○ 안전관리 VS 산업지원

- 국가간 대립,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 등 세계 각국의 자국보호주의가 나타나고 있음
- 식품 원재료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 단순가공품을 수출하는 **미국, EU**에서는 해당 식품에 대한 **잔류농약의 기준 신설과 검사확대를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** 추세임
- **캐나다, 호주**에서는 자국 식품산업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**신기술로 생산된 식품첨가물, 가공보조제 등의 사용 확대**가 두드러짐
- 한국산 식품의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**국내 가공보조제 등의 사용 확대와 더불어 신속한 제외국의 안전관리 강화 정보 공유가 필요함**

1) 유해물질 관리 강화



[미국]

- 현재 국내에서 최대 잔류허용량 미설정 잔류농약인 **플루오피람, 플루오피콜라이드**의 최대허용량이 설정되어 수출 시 기준 준용이 요구됨



[EU]

- EU의 **에틸렌옥사이드(EO)** 잔류허용량은 곡류, 과일, 채소류 0.02ppm이며, 국내의 경우 EO로부터 생성 가능한 2-클로로에탄올에 대하여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30mg/kg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
- 국내에서는 커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, EU는 커피에 **아미소페티미드**의 잔류허용량이 0.05mg/kg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커피유래 식품의 수출 시 주의 요함



[대만]

- **멜라민** 최대잔류허용량을 일반식품에 대하여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함

2. 기준규격 변동 현황 시사점

○ 안전관리 VS 산업지원

2) 신소재 식품첨가물 사용 확대



[캐나다]

- 현재 국내에 사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, bio-technology를 활용한 유전자 변형 미생물 유래 **알파아밀라아제, 장쇄당지질, 셀룰로스, 서모리신**의 사용이 확대되었음

- 아세트살팜, 젤란검의 사용이 확대되었으나 캐나다의 사용기준과 국내 사용기준이 상이함으로 수출 시 해당국의 기준규격 확인 및 준용이 반드시 필요함
- 굴소스에 허용 확대된 **소브산칼륨**은 국내에서도 동일한 사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음



[호주]

- 식품 제조 시 미생물의 특정 유전자 발현 조절 생산 **글루코아밀라아제, 포스포리파아제**를 가공보조제로서 사용을 허가함. 국내에는 이 두 물질이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사용 가능함. 단, GM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경우 GMO 심사 후 첨가물 지정 필요



[EU]

- 현재 국내에 사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, 시리얼, 스프레드에 사용 확대된 **갈락토올리고당**은 국내 기준 당류 가공품에 해당하며 수출 시 수출국의 기준 준용이 필요함

- 활용 미생물의 특정 유전자 발현하여 생산된 **EPA/DHA, Jatropha curcas L**(대추과 식물)은 신소재원료의 사용 확대로 현재 국내에는 사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



[태국]

- 음료 형태에 따라 **카페인**의 최대사용 허용량을 설정하였는데, 국내에서는 탄산음료에 한하여 0.015% 이하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해당국의 기준규격의 확인 및 준용이 요구됨